

부천시제2의건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11. 7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1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998. 11.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가. 제안이유

○ 제2의건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

나. 주요골자

-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의 수립 등 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제1항)
-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안 제3조제2항)
-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관련공무원과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안 제3조제3항)
- 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게 함(안 제3조제4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및 시의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안 제4조)
-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며 시소속 공무원은 제외함(안 제9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조례를 제정하면서 꼭 표준안과 같이 제정을 해야 합니까?	○ 전국적인 표준안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해도 됩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묘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 61 호
의결년월일 (제66회)	98. 11. 14

제안년월일 : 1998. 11. 11

제 안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가. 부천시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의 시행정부 당연직위원과 간사 및 서기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시행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수정함.

2. 주요골자

가. 시행정부의 당연직 위원을 행정지원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조정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간사를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위원회의 서기를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에서 담당과장으로 상향조정함.(안 제7조)

부천시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행정지원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담당과장”을 “담당국장”으로, “담당”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구성) ①~②(생략) ③(생략) 1. (생략) 2. 시의 <u>행정지원국장과</u>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 서 경무과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 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3.(생략) ④(생략)</p> <p>제7조(간사, 서기) ①(생략) ②간사는 위원회 소관업무 <u>담당과장</u>이, 서기는 위원회 소관업무 <u>담당</u>이 된다.</p>	<p>제3조(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부시장과</u> 3.(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 <u>담당국장</u> <u>담당과장</u></p>

【수정안포함】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민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2의 건국과 관련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정부에서 확정한 개혁과제 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 제2의 건국과 관련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 시의 부시장과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의전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전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또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서기는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